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11. 17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도하석 의원 등 9명(김장관, 이진환, 황국주, 정순옥, 박왕규, 장호섭, 권숙자, 이영빈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3. 11. 17.)

2. 개정이유

-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,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입안·심사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(안 제2조)
- 나.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사항을 반영(안 제2조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)
- 다.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중복 해석되는 보훈단체를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정(안 제3조)

- 라. “애국지사”의 범위를 “희생·공헌자”로 개정하여 장례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(안 제7조제2호)
- 마. 상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(안 제7조의2제1항제4호)
- 바. 중단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차후 민원발생 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규정 신설(안 제7조의3)
- 사.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구민 중 희생·공헌자로서 대상이 됨에도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 규정 신설(안 제7조의4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, 제19조
 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3. 11. 3. ~ 2023. 11. 13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훈예우수당을 부당 혹은 잘못 지급했을 경우 이를 중지·환수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의 엄정성을 제고하며,
- 특히 2023년 10월 현재 생존하신 희생·공헌자 2,520분에 대한 장례지원사업을 통해 보훈예우의 의미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제2조에서 “국가보훈대상자”와 “보훈단체”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고 있어, 안 제3조에서 이에 대해 별도의 의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,

- 안 제7조의2 중 “보훈예우수당”을 “수당”으로 약칭하는 것은 “보훈예우수당”에 담긴 보훈예우의 의미를 생략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이를 “보훈수당”으로 약칭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안 제7조의4 중 “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상”은 관리대장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이는 “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예우 및 지원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
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

안 제7조의2제2항 중 “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 ”을 “보훈예우수
당(이하 “보훈수당”으로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당”을 “보훈
수당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3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“수당”을 “보훈수당”으로 하고, 제2
항 중 “수당”을 “보훈수당”으로 하고, 제2항제2호 중 “수당”을 “보훈수당”으
로 한다.

안 제7조의4 중 “수당”을 “보훈수당”으로 하고, “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”
을 “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3조(예우 및 지원 대상) 이 조례</u> <u>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</u> <u>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</u> <u>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및 국가보</u> <u>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</u> <u>한다.</u></p>	<p><u>제3조(예우 및 지원 대상) 이 조례</u> <u>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</u> <u>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</u> <u>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</u></p>
<p>제7조의2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보훈예우수당</u> 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 지급액 은 구청장이 정한다.</p> <p>③ <u>수당</u>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 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</p>	<p>제7조의2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보훈예우수당</u> (이하 “<u>보훈수당</u>”으로 한다) -- -----.</p> <p>③ <u>보훈수당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의3(지급의 중지 및 환수)</p> <p>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<u>수당</u>의 지급을 중지하여 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수당</u>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</p>	<p>제7조의3(지급의 중지 및 환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보훈수당</u>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보훈</u> <u>수당</u>-----</p>

있다.

1. (생략)

2.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
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
경우

제7조의4(지급대상자의 관리) 구
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
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
상자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
여야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보훈수당-----

--

제7조의4(지급대상자의 관리) --

---- 보훈수당 -----

----- 보훈예우수당 지급

대상자 관리대장-----

-----.